



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중증치매 산정특례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안내

1. 건강보험 업무에 대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리며,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2017. 10월부터 중증치매에 대하여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 5년이 도래하는 2022. 10월에 중증치매 산정특례 재등록이 첫 시행될 예정입니다.
3. 이에,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(신규 및 재등록)을 위한 필수 검사결과 유효기간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아래와 같이 기준을 마련하였으니,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귀 기관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검사결과 유효기간 최종 기준

검사항목	유효기간
영상검사 (뇌 MRI, 뇌 CT)	(신규 등록) 중증치매 뇌병변이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을 특정하지 않음 ※ 단, 신청일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(진료기록부 등의 보존)에서 정한 보존 기간(5년)은 초과할 수 없음
혈액검사	(신규 등록) 인지기능 저하 이후 실시한 검사로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
CDR or GDS, MMSE, 신경심리검사	(신규 및 재등록)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

○ 적용일 : 2021. 3. 22.

○ 기타 : 영양기관정보마당 관련 내용 게시. 끝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신경과학회장,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, 보험심사간호사회장

과장

구회자

팀장

장은정

부장

전결

3/22

조순자

협조자

시행 산정특례운영부-635 (2021.3.22.) 접수

()

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, 21층 (반곡동, 국민건강보험공단)

/ <http://www.nhis.or.kr>

전화 033-736-4652

전송 033-749-9616

/ kuhj@nhis.or.kr

/ 비공개(5)